

제296회 정례회
2010. 12. 24(금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2010. 12. 24(금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- 나. 제출일자 : 2010년 12월 8일
- 다. 회부일자 : 2010년 12월 10일
- 라. 상정일자 : 2010년 12월 15일

(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윤영현)

가. 제안이유

-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직급채정(3급,한시) 연장협약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협의됨에 따라 한시기구의 명칭 변경 및 연장 기한을 조정하고,
- 일부 기구의 신설과 명칭변경, 북부출장소 소관사무 지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한시기구 명칭변경 및 기한 연장 (안 제5조, 제13조)
 - 명칭 :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→ 「바이오밸리추진단」으로 변경
 - 기한 : 2010.12.31까지 → 2012.12.31까지 (2년 연장)
-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 신설 (안 제25조, 별표1)

- 대추연구소 신설(보은군 관내)
- 사업소 명칭변경 : 종자사업소 → 농산사업소(안 제44조, 제45조, 제46조)
- 북부출장소 소관사무 지정 (안 제59조)
 - 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
 -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(광업, 전기, 산림, 농업, 환경분야 등) 처리에 관한 사항
 -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

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장용대)

가. 개정취지

이번에 제출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직급체계 연장협약의와 일부기구의 신설과 명칭변경, 북부출장소 소관사무 지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.

나. 한시기구 명칭변경 및 기한 연장

행정안전부와의 한시기구에 대한 연장협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을 「바이오밸리추진단」으로 변경하고,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기구의 기한을 연장함.

다. 기구신설, 명칭변경, 소관사무 지정 등

먼저,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인 대추연구소(보은군 관내)를 신설하고, 종자사업소를 농산사업소로 명칭 변경하며, 북부출장소의 소관사무를 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,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 처리, 관할구역 내 주민편의를 위한 현안사업

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지정.

이번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의 연장, 특화작목시험장의 신설, 사업소의 명칭변경, 출장소의 구체적 소관사무 지정 등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부터 제11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부터 제115조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”을 “바이오밸리추진단”으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)”을 “(바이오밸리추진단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”을 “바이오밸리추진단장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작목시험장으로 포도연구소, 마늘연구소, 수박연구소, 대추연구소, 잠사시험장을 둔다.

제4장제4절의 제목 “충청북도종자사업소”를 “충청북도농산사업소”로 한다.

제44조제1항 중 “충청북도종자사업소(이하“종자사업소”라 한다)”를 “충청북도농산사업소(이하“농산사업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조 제2항 중 “종자사업소”를 “농산사업소”라 한다.

제45조 중 “종자사업소”를 “농산사업소”라 한다.

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6조(소관사무) 농산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농산물 원종생산 및 품종개량에 관한 사항
2. 농산물 보급종자 생산·보급에 관한 사항

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9조(소관사무) 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
2.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(광업, 전기, 산림, 농업, 환경분야 등) 처리에 관한 사항
3.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

조례 제3276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) 바이오밸리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2년12월31일까지로 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5호가목 중 “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”을 “바이오밸리추진단”으로 한다.

②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·의회사무처”를 “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·의회사무처”로 한다.

③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중 “직속기관·사업소”를 “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”로 한다.

④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중 “직속기관·사업소”를 “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”로 한다.

⑤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9호중 “직속기관 및 사업소”를 “직속기관·사업소 및 출장소”로 한다.

⑥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5조 중 “도·직속기관·사업소”를 “도·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”로 하고,
“직속기관·사업소”를 “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”로 한다.

⑦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항 중 “직속기관, 사업소 및 보조기관”을 “직속기관, 사업소, 출장소 및 보조기관”으로 한다.

⑧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직속기관, 사업소”를 “직속기관, 사업소, 출장소”로 한다.

⑨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직속기관, 사업소”를 “직속기관,사업소,출장소”로 한다.

⑩ 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 중 “직속기관 또는 사업소”를 “직속기관·사업소 또는 출장소”로 한다.

⑪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, 제10조 및 제13조 중 “실·국·본부·원장 및 사업소장”을 각각 “실·국·단·본부·원장·사업소장 및 출장소장”으로 한다.

[별표 1]

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(제25조제3항 관련)

명 칭	위 치
포도연구소	옥천군 관내
마늘연구소	단양군 관내
수박연구소	음성군 관내
대추연구소	보은군 관내
잠사시험장	청주시 관내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와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충청북도 행정기구, 소속기관의 설치,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와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충청북도 행정기구, 소속기관의 설치,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5조(실·국·단 본부의 설치)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, 정책관리실, 행정국, 보건복지국, 경제통상국, 농정국, 문화여성환경국, 균형건설국,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및 소방본부를 둔다.</p>	<p>제5조(실·국·단 본부의 설치)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, 정책관리실, 행정국, 보건복지국, 경제통상국, 농정국, 문화여성환경국, 균형건설국, 바이오밸리추진단 및 소방본부를 둔다.</p>
<p>제13조(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)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4. (생략)</p>	<p>제13조(바이오밸리추진단)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4. (현행과 같음.)</p>
<p>제25조(특화작목시험장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작목시험장으로 포도연구소, 마늘연구소, 수박연구소, 감사시험장을 둔다. ③ (생략)</p>	<p>제25조(특화작목시험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작목시험장으로 포도연구소, 마늘연구소, 수박연구소, 대추연구소 감사시험장을 둔다.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절 충청북도종자사업소</p> <p>제44조(설치)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농산물 원종 및 보급종의 생산·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종자사업소(이하 "종자사업소"라 한다)를 설치한다 ② 종자사업소는 충청북도 진천군 관내에 둔다.</p>	<p>제4절 충청북도농산사업소</p> <p>제44조(설치)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농산물 원종 및 보급종의 생산·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산사업소(이하 "농산사업소"라 한다)를 설치한다 ② 농산사업소는 충청북도 진천군 관내에 둔다.</p>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5조(소장) <u>중자사업소</u> 에 소장을 두고,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	제45조(소장) <u>농산사업소</u> 에 소장을 두고,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제46조(소관사무) <u>중자사업소장</u> 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1.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46조(소관사무) <u>농산사업소장</u> 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농산물 보급종자 생산·보급에 관한 사항
제59조(소관사무) <u>소장</u> 은 도지사가 위임하는 관할구역내의 도의 사무(도지사의 사무를 포함한다)를 관장한다. 다만, 특정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제59조(소관사무) <u>출장소장</u> 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1. 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.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 업무(광업, 전기, 산림, 농업, 환경분야 등) 처리에 관한 사항 3.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
부 칙(2010. 8. 11 조례 제3276호)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u>다만, 제46조제2호와 제5조부터 제59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출장소의 조직 등에 관한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</u>	부 칙(2010. 8. 11 조례 제3276호)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【지방자치법】

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③ ~ ⑥ (생략)

제115조(출장소)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제16조(지방농촌진흥기구) ① 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·농촌지도사업·농민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농업기술원을 두며,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·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장 소속으로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다.

② ~ ③ (생략)

④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업기술원·농업기술센터와 특화작목시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